

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2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4. 13.
제 출 자 : 남 양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조항 삭제(안 제3조)

-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명시

종 전	개 정
조례로 재산세 50% 범위내 감면율을 정함	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재산세 50% 감면율 명시

나. 관련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(안 제5조제3호)

-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상위법 변경
(수산가공품 전문 판매점)

종 전	개 정
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“수산가공품 전문 판매점”	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전문판매점”

3. 개정조례안: 별첨

4. 비용추계서: 붙임 1

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9조의4제1항제1호”를 “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”로, “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”을 “전문판매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관·과		세 정 과
입안자	관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유 회 근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기획팀장 안 병 찬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호 진 (031-590-2186)

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
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
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1.·2. (생략)

3.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19조
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
공품의 생산·개발·수출촉진
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
설치·운영을 하려는 자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
1항제1호-----
-- 전문판매점-----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

※ 주요 개정내용

○ 지방세 시세 감면 조례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조항 삭제 및 조문 현행화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(☞ 단순 조문 정비에 해당)

4. 작성자

산업경제국 세정과장 유희근